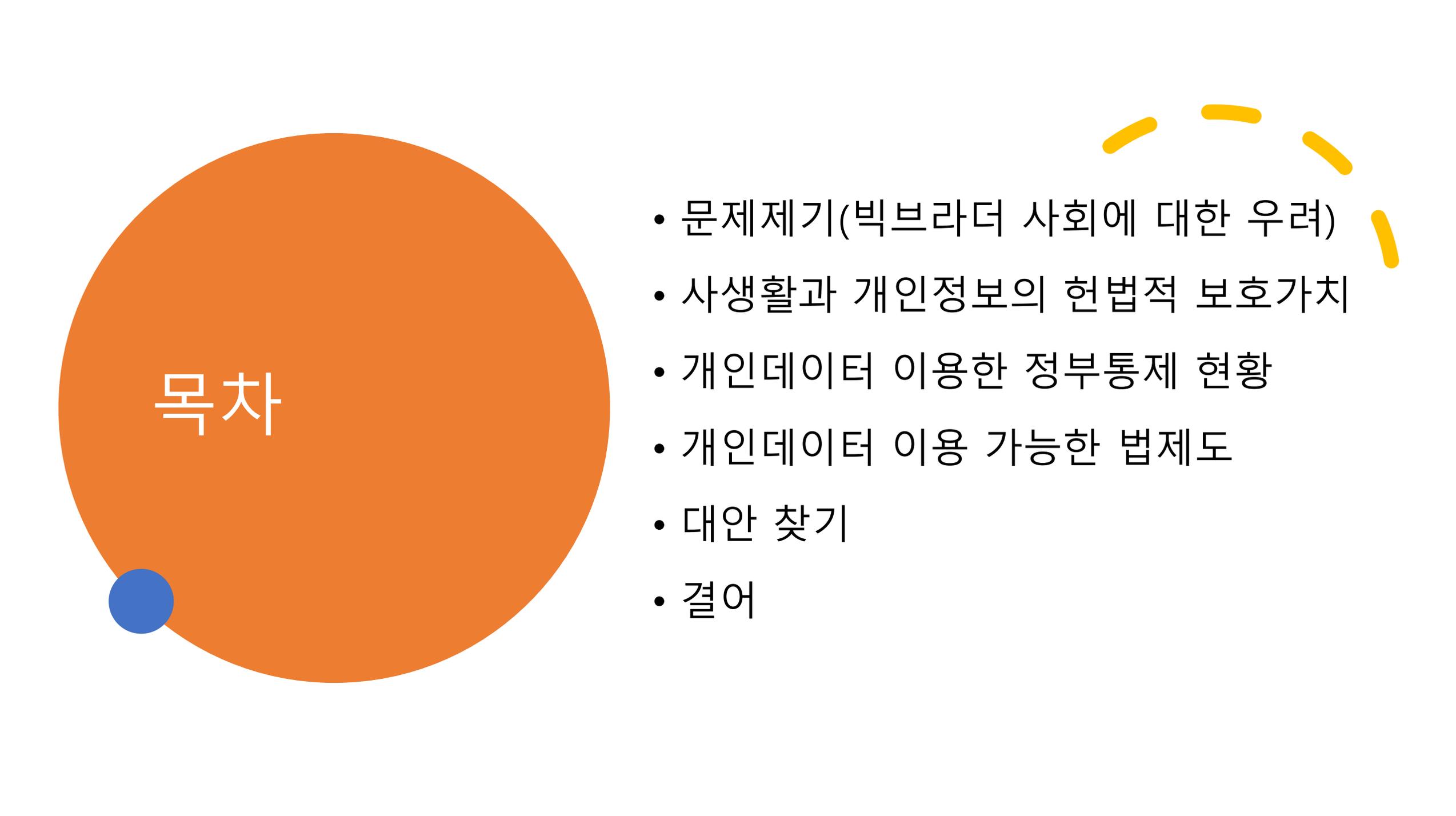


빅브라더의 데이터 통제 현황과 대응방안

전삼현
(송실대 법학과 교수)



목차

- 문제제기(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
-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호가치
- 개인데이터 이용한 정부통제 현황
- 개인데이터 이용 가능한 법제도
- 대안 찾기
- 결어

#코로나19 #확진자 #중국 #재난지원금 #윤석열

뉴스홈 | 최신기사

"이태원 클럽 관련 4만6천명 진단검사...확진자 161명"

송고시간 | 2020-05-16 11:23



김잔디 기자
기자 페이지

"익명검사 도입후 검사 증가...지역 내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아"
클럽·감성주점 등 총 1만928곳 합동점검...22건 행정지도, 20개 업소 고발조치



9
연



문제제기(빅 브라더 사회 도래 우려)

- 문제제기의 단초
 - 2021년 4월 30일부터 7일간 코로나19 감염 확산 관련,
 - 이태원 내 5개 클럽 방문한 5517명과 클럽 주변 30분 이상 머문 5만 7536명 추적
 - 이태원 감염자 대부분인 총 246명 색출
 - GPS를 통해 개개인의 스마트폰 위치 확인, CCTV로 재확인 등 추적 기술은 완성단계
 -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카드, 약물사용 기록 등을 통한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을 통해 '이태원클럽' 방문자 모두 색출
 -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명분하에 정부차원의 개인 데이터(정보) 이용이 자유롭다는 우려 현실화

방문자 색출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보건 의료 실태조사)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빅브라더 사회화 수단, 개인정보(데이터)의 헌법적 가치

-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핵심요소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 확인 못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알 수 있는 정보 포함
- 대한민국 헌법은 가장 강력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호 규정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직접보호규정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간접 보호규정

개인정보, 헌법적 보호

- 독일 헌법은 직접 규정 없음
 -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행복추구권에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호 근거
- 미국도 헌법에 행복추구권 규정 없음
 - 프라이버시권의 근거를 수정헌법 제4조
 -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에 대하여 국민의 신체, 가택, 서류와 재산을 보장하는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규정에서 판례를 통해 헌법적 권리로 인정
- 일본은 사생활보호 규정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 논의 있었으나 실패
 - 현재는 일본 헌법 제13조 인간존중과,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근거
- 사생활보호 직접 규정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만, 실제로는 국가로부터 침해 받는 경향 강함

디지털 사회 와 사생활 비밀&자유 위기

- 빅데이터 기반 AI, IoT 경제활성화 위해 개인정보가 공유되어야 산업 발전한다는 명분과 함께 정부 감시로 인한 사생활침해 확대
- 사생활은 개인 자유권이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의 산물로 보면 사익도 공공복리 위해 제한가능하다는 헌법적 명분 존재 (헌법 제37조 제2항)
- 공공복리의 개념 다의적이지만 과잉금지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는 해석보다는 양 법익간 합리적 균형 필요
- 선진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정비사적 영역의 기업과 국민간 이해충돌 조정 차원 기준 제시하는 개인 데이터 법제 정비

한국민의 사 생활 비밀 & 자유 침해 입법 현황

-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유독 디지털경제 활성화, 즉 신산업 육성 명분 강조해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 민간 개인정보처리자 보유 데이터도 가명정보 처리하면 정부기관 및 민간 사업자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가능하도록 입법 (2020년 1월 데이터 3법)
 - 2021년 10월, 데이터기본법 제정해 개인정보의 가치평가 명목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부동산거래법안 국회 상정해 거래 데이터 확보해 사유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외관상 한국 법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즉 자기결정권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제한이 많고 국민도 이를 인지 못하고 있음
 - 기술적 접근 가능성 확대로 자기 결정은 타자결정으로 대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개인정보

홍길동(22세.남)
 010-2345-678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1길 12
 ghdrifehd365@naver.com
 데이터 사용량 12.7GB
 통화시간 124분 41초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가명정보

*** (20대. 남)
 01 *일련번호로 대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aver.com
 데이터 사용량 12.7GB
 통화시간 124분 41초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일련번호로 대체하여 비식별 처리



익명정보

*** (20대. 남)
 --***
 경기도 성남시
 @.***
 데이터 사용량 10GB 이상
 통화시간 많음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

·상한 중국 건강코드..."인권변호사, 6중대회 기간 발뭇여"

류언은 "모두에 평등하지 않은듯"..."반체제인사들 되도록 사용 안해"

입력 : 2021.11.19 10:43:12 수정 : 2021.11.19 10:48:11



국 공산당 6중 대회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한 디지털 건강코드가 반체제인사에게는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 명보는 19일 "중국에서 건강코드는 전염병 방역을 위한 디지털 통치의 수단으로 전자통행증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외국 정부 개인정보 이용 (중국)

- 코로나19 개인정보
 - 코로나19 감염 경로 추적시 개인 동선 데이터 활용
 - 알리바바, 고객 데이터 이용, 개인별 코로나19 위험도를 QR코드 색깔로 구별해주는 '젠캉마(健康碼)'와 상하이판 '수이션마' 개발
 - 공공기관은 물론, 아파트단지 출입하는 택시기사나 음식배달원은 수이션마 제시해야 출입가능
 - 코로나19 이용 중국은 QR코드로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 감시체제 확립

앤티그룹 돌연 상장 중단 진짜 이유...시진핑, 정적 견제

WSJ "시진핑의 정적 견제 탓에 돌연 IPO 중단"
상하이방 장쩌민 전 주석 측근 인사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
상장 후 경쟁세력의 막대한 차익 실현 막고자 사전에 '자금줄' 차단

김대기 | 입력 : 2021.02.20 14:59



▲ 앤티그룹

외국의 개인금융정보 이용 (중국)

- 2021년 1월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 중국 공산당국, 앤티그룹 보유 소비자 신용데이터 노린다는 기사
 - 마윈 80% 지분 가진 앤티그룹, 10억명 사용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 5억명 이용 대출서비스 데이터 보유 핀테크 기업.
 - 앤티그룹은 자체 신용점수 시스템으로 독립적으로 고객 신용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서 공산당이 이를 공유하면 국민통제 용이
- WSJ에 따르면 수년 전 인민은행이 개인 신용정보회사를 만들었을 당시 앤티그룹과 텐센트 등 관련 기업들에게 고객 신용 데이터 공유를 요청했으나 앤티그룹이 이를 거부
 - 앤티그룹 상장실패 후 금융지주사로 전환해 인민은행 감독대상

외국 정부의 개인정보 이용 (유럽)

- 미국/유럽 대부분 국가의 방역당국은 개인정보 열람 허용 법규정 없음
 - 미국과 유럽 국가들 코로나19환자 수 급증 이유
 - 열람 금지는 개인의 자유, 행복추구권 (행동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 자기책임원칙)에 근거
 - 우리 헌법이 사생활 보호권(프라이버시 권)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 못 받는 것과 대조적
- 유럽
 - EU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2016년 제정되어 2018년 시행
 -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
 -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 및 이용권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음



유럽 '코로나 재확산에 봉쇄조치 대신 백신 접종에 '시할'

기사입력 2021-11-11 11:12:52
기사수정 2021-11-16 09:51:18

기사

주춤했던 확산세, 가을 되자 또 다시 '일파만파'...무서운 기세 '위드 코로나' 등 방역 조치 완화, 실내 활동 증가 주요 원인 WHO로부터 "코로나 대유행 진원지" 지적...벗어나려 안간힘 봉쇄조치로 빠져린 피해 겪어 코로나 백신 접종률 제고 노력 접종 연령 확대, 백신 패스 기간 연장, 백신 의무화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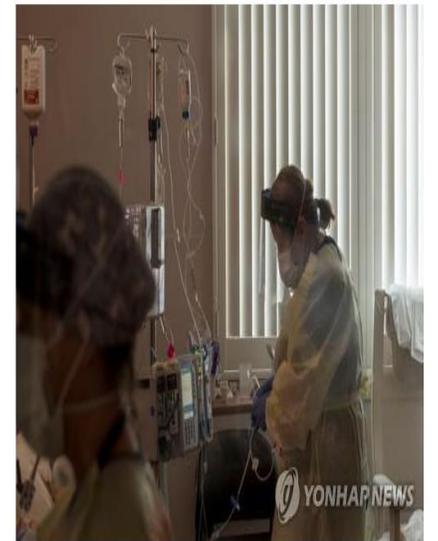


외국 정부의 개인정보 이용(미국)

- 미국
 - 프라이버시권은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로 확립
 - 다만,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그 인정여부 불명확하지만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추정 (최희경, 이화여대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2014.12), 30면 참조)
 - 연방 차원 정보보호법 없으나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2018년 제정, 2020년 시행
 - GDPR 참고하여 정보주체의 열람권, 삭제요구권이나 정보 요구권, 판매중단 지시권 등 규정

미국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8만명..한달 만에 다시 늘어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1.11.16 10:57 | 최종수정 2021.11.16 10:57 | 댓글 0



[출처-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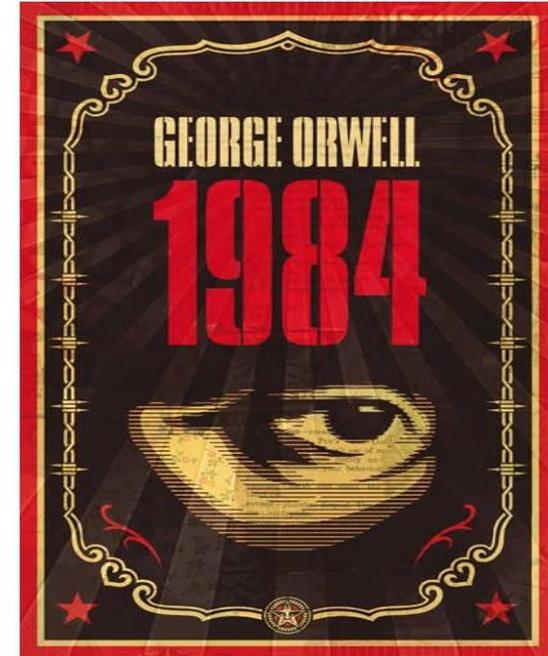
대한민국은 빅 브라더 사회인가 ?

- 조지오웰 1949년작 "1984년", 모든 것 통제하는 최고 권력자, 빅브라더
 - 전체주의의 상징으로 표현
- 비대면 사회는 인간 활동 모두가 데이터화 되어 공유되는 사회 가속화
 - 빅브라더가 공유데이터 이용, 국민 통제 시 전체주의 가속화 우려
 - 2020년 1월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해 민간사업자는 데이터 가명정보화하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해당 데이터 수집/이용 가능하고 정부의 이용 범위 확대 합법화
 - 현재 마이데이터 활성화 명분 내세워 데이터기본법 제정했고, 추가로 부동산거래법안도 국회 상정해 제정시도



대한민국은 빅브라더 사회인가 ?

- 데이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직결, 데이터 공유는 신산업육성에 기여 하지만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을 침해 우려가 있음
- 신산업 육성에도 기여하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보호도 보장 하는 법제도 준비가 시급
-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관련 입법은 빅데이터 등 신산업육성 명분 내세워 대한민국을 전체주의화 한다는 의심
- 전체주의화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고 법령을 통해 서서히 진행
- 데이터 관련 입법이 향후 대한민국을 전체주의화하는 촉매제 될지 검토 후, 후속 대응방안 모색 필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1984년'

위험 신호1 (정부의 개인정보 직접 이용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 않는 경우에 한함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위험신호 2(정부의 직접 이용권한)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2021.10.19.제정, 2022.4.20.시행
-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위험신호 3 (규제 통한 간접 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 ④ 금융위원회는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021년 1월 국내 28개 금융기관이 본허가)



본인계좌정보 통합 조회



A 은행



B 카드



C 보험



D 증권



E 전자금융



위험신호4 (부동산 거래정보 직접 통제 시도)

YTN

- 2021년 2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국회 계류 중
-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 담은 법률 개정안 (민주당조응천 의원 대표 발의) 2021년 9월 국회 상임위 상정
- 분석원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적정성 확인 위해 자료를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함

국토부 장관 "부동산거래분석원·감독원 등 조직 신설 바람직"

2021년 11월 10일 17시 04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부동산감독원과 같은 조직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노 장관은 국토부가 부동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이미 누차 말씀드렸고,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험신호4 (부동산 거래정보 직접 통제 시도)

- 부동산거래분석원
 - 신고 내용 조사 과정에 진실성이 의심돼 확인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고 금융회사들도 역시 응해야 함
 - 형사사건 수사 등 위해 필요하면, 분석원은 경찰청이나 국세청, 금감원 등에 정보제공 가능
 - 투기목적 거래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해선 금융회사 등이 담보대출에 대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의무 부과
 -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 시세 조작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계약을 하는 행위 등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몰수나 추징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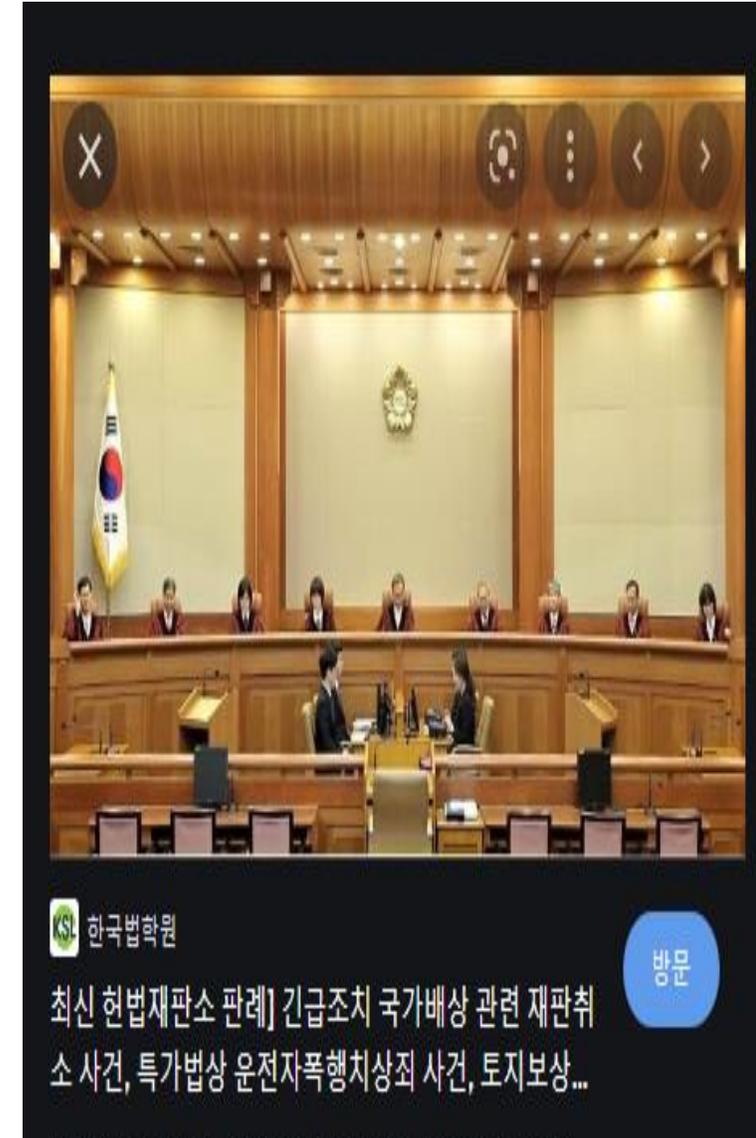
대응방안 찾기1 (지속적인 빅 브라더 위험성 제기)

- 사생활 침해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험성 제기 필요
 - 내 데이터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으면 정부 주체에게도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데이터 입법 실현
 - 정작,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수익사업 가능하지만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의무 규정 없음
- 헌법 제17조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행복추구권)
 -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과잉금지의 원칙)



대응방안 찾기1 (지속적인 빅 브라더 위험성 제기)

- 데이터 관련법이 행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되지는 검토해 볼 필요
 - 디지털 데이터는 보호권보다는 미국 프라이버시에 대한 해석처럼 정보공개 선택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데이터 사용 허용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통해 빅브라더사회 예방 노력 필요
 - 데이터관련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있음 (입법목적의 정당성, 통제방법의 적절성, 피해최소성, 법익균형성)



대응방안찾기 2 (국가 배상책임 추궁 통한 빅 브라더 예방)

- 정보소유자인 정보주체는 동의만 할 수 있어 사용권은 있으되 수익권, 처분권 없음
- 최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으로 사용, 수익, 처분 모두 가능한 것처럼 신용정보법 개정했으나 실상은 변화 없음
-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가 사용하고 수익 얻고, 처분권도 행사
- 정보주체(개인)는 사업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 가능하지만 정부상대로 국가배상 또는 담당공무원 형사처벌 거의 불가능

대응방안찾기 2 (국가 배상책임 추궁 통한 빅 브라더 예방)

- 국가배상법상 국민이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으나 (제2조), 배상기준의 범위가 협소 (제3조)
 - 사망, 상해, 물건의 멸실/훼손
 -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 위자료 소송은 개인정보유출사건을 보면 10만원 정도 배상
-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에 국가 배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모색 필요

대응방안찾기3 (마이데이터 보상시스템을 통한 이용억제)

- 지난 5년간 빅데이터가 핫이슈, 3년 여 전부터는 마이데이터가 화두
 -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021년 1월 국내 28개 금융기관이 본허가)
 -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면서 마이데이터 보상체계 도입논의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오픈

발행일 : 2021.08.05 1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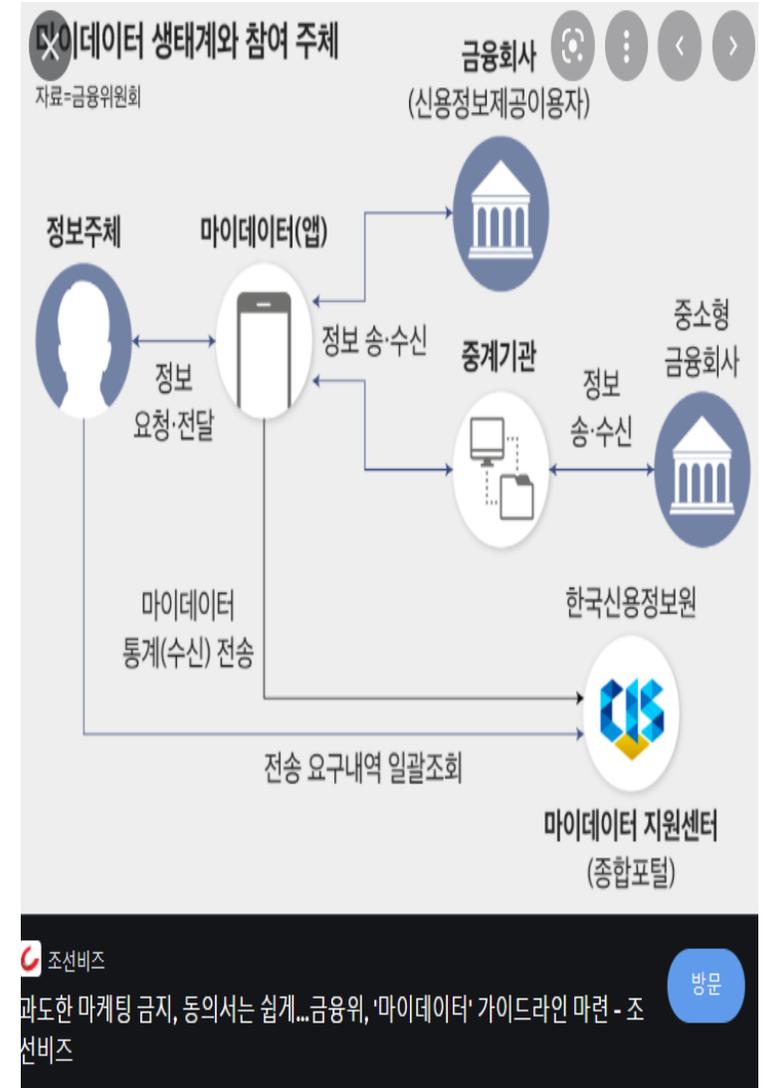


↳ 그것이 알고싶다, '노후자금 30억 모은 부부' 비법 공개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MyData 종합포털.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logo and the text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several menu items: '지원센터 소개', '종합포털 이용안내', '마이데이터란', '마이데이터 API', and '고객지원'.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lue banner with the text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and a sub-header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To the right of the banner, there is a grid of icons representing different services: '마이데이터란', '참여기관', '허가절차', '역할 및 구성', '중계기관', and 'API 소개'. On the far right, there is a sidebar with a search bar and a list of news items, including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공고',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거 자...', '위대구은행 등 8개사에 대...', and '21.5.26. 금융위원회, 혁신금...'. The sidebar also includes a '보도자료' section with a '+>' button.

대응방안찾기3 (마이데이터 보상시스템을 통한 이용억제)

- 마이데이터 보상을 위한 법제정비는 미완성
 -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생산자의 데이터자산 보호 규정했지만 (제12조) 정보주체의 데이터자산보호나 보상 근거 없음
 - 데이터의 객관적인 가치평가기관 지정만으로 안되고 정보주체의 데이터자산보호와 보상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 마이데이터 보상규정 신설시 민간사업자 뿐만 정부기관도 보상주체로 규정해야 오남용 방지 가능
 - 마이데이터 보상은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컨트랙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암호화폐규제 완화 필요 (소득공제기준액을 250만원 이상으로 인상 필요)



대응방안찾기4 (탈중앙 금융 DeFi 활성화 통한 대체방안 모색)

- 탈중앙 금융기술 출현 (중앙서버없는 금융거래)
 - 2009년 중앙서버없이 합의알고리즘 이용해 개인 PC상의 다수 합의로 거래사실 증명해 비트코인을 송금 및 결제하는 글로벌 탈중앙화 기술구현 (1세대 블록체인)
 - 2015년 스마트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 접목해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된 글로벌 단일 컴퓨터 시스템 완성해 탈중앙화자율조직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 가능 (2세대 블록체인)
- 각국 정부/IT플랫폼 기업, 블록체인 이용해 정부가 발행하는 CBDC 또는 민간주도 암호화폐 (예: Diem, 구 Libra) 발행해 중앙화 시도

21. 11. 21. 오후 4:26

위메이드, 디파이 서비스 '클레바' 선보여 - 조선비즈

IT >
ICT

위메이드, 디파이 서비스 '클레바' 선보여

박지영 기자

입력 2021.11.19 15:06



위메이드의 디파이 금융서비스 '클레바'. /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는 19일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클레바'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디파이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파이 참여자들은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 이런 과정을 가리켜 '이자농사'라고 한다.

대응방안찾기4 (탈중앙 금융 DeFi 활성화 통한 대체방안 모색)

- 탈중앙금융과 중앙금융간의 충돌 불가피하지만, 탈중앙 금융시장 급성장 해 대안으로 등장
- 2020년에는 Uniswap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 (DEX: Decentralized Finance) 등장
- 2020년 에이브(AAVE)가 탈중앙대출플랫폼 (Lending Platform) 서비스 시작 이후 각종 탈중앙화 금융 (DeFi: Decentralized Finance) 확대
- 2021년 11월 현재 DeFi에 예치된 암호화폐 자산이 1천억 달러 (연초 200억 달러에서 1년도 안돼 5배 증가)
- 국내 상용화된 암호화폐 디파이 업체는 런던에 본사를 둔 "에이브 프로토콜(Aave)"는 삼성블록체인 월렛에 탑재. 국내 본사를 둔 카카오블록체인서비스 "클립(Klip)"은 "클레이스테이션"을 통해 디파이 사업 중
- 탈중앙금융이 기술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으면 대안될 수 있으나,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가 작동하는 경우 정착 어려움

MK 뉴스

인쇄하기

취소

올해 들어 디파이 상품 관련 사기절도 피해액 12조5천억원

블록체인 분석업체 일립틱 데이터...디파이에 돈 몰리며 범죄도 증가

입력 : 2021.11.20 03:58:44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쓰이는 기술인 이더리움 가상화폐의 모형

새로운 금융 거래 기술인 탈(脫)중앙화 금융(De-Fi·디파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기·절도 피해액이 올해 10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찾기 5 (탈중앙 메타버스를 통한 대안 모색)

- 2020년부터 아바타 이용한 3차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서 암호화폐와 복제불능토큰(NFT)의 효용 증가 예상
 - 탈중앙화 메타버스와 중앙화 메타버스간 대립양상
 - 중앙화된 테크기업 주도 메타버스 세상 도래하면 빅브라더의 등장이 불가피
 - 기술전문가들 의견은 중앙과 탈중앙 메타버스가 병존이 불가피한 만큼 대안이 될 가능성 높음

이데일리 2021년 11월 21일 일요일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 Q 증권 주식 종목 **펀드** 국제시황

[펀드와치] 연일 신고가...한주간 12% 뚝 메타버스 ETF

1주간 위메이드 25.5%·텍스터 34.5% ↑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1.23%

등록 2021-11-21 오전 8:00:00
수정 2021-11-21 오전 8:00:00

가 가



김윤지 기자

N 기자구독



대안찾기 5 (탈중앙 메타버스를 통한 대안 모색)

-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탈중앙화된 가상국가들이 각자의 독립된 프로토콜(규범체계)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빅브라더의 위험은 적을 것으로 예상
 -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IT기술을 이용해 모든 것이 복제될 가능성이 높아 NFT가 불가피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과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개인간(P2P) 거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에 추가한 새 지침 마련
- 특정금융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NFT가 제도권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 필요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민세희)이 20일부터 29일까지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전시회 「GCA NFT EXHIBITION 2021」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2021 NFT 마켓 진출 워크숍'에서 최종 발행된 NFT 작품 전시회다.

결어

- 대한민국 헌법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높은 가치로 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은 반대라는 우려 지속적으로 제기
-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개인 통제가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중국과 가까운 것으로 판명
- 문재인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에 데이터 관련법을 제개정해 정부가 개인 데이터를 쉽게 이용해 빅브라더가 되려한다는 의혹 증폭
- 국회 상정한 부동산거래법을 보면서 의혹은 사실로 확인
- 빅브라더 사회는 전체주의 국가를 의미하는 만큼 이를 탈피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
- 데이터 관련법률 개정 노력, 데이터보상 시스템 구축, 탈중앙화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